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12
----------	-------

발의연월일 : 2026. 1. 26.

발의자 : 김미애 · 박정하 · 김기현

성일종 · 김정재 · 박상웅

김민전 · 이종배 · 송석준

곽규택 · 이달희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 · 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청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의 취업 준비기간,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 등 취업 및 재취업의 과정인 전환기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에 있는 청년에게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및 제22조의2 신설).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환기 청년”이란 취업 준비기간,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간 등 취업 및 재취업의 과정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기간 중에 있는 청년을 말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전환기 청년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기 청년에게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3조(정의) -----.</p> <p>1. ~ 7. (현행과 같음)</p> <p><u>8. “전환기 청년”이란 취업 준비기간,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등 취업 및 재취업의 과정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기간 중에 있는 청년을 말한다.</u></p>
<p><u>&lt;신 설&gt;</u></p>	<p>제22조의2(전환기 청년 특별지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기 청년에게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